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97 |
|----------|-----|

2023. 6. 1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어르신에게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후화된 구립경로당을 신축한 학리·삼성 시니어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문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하고자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나. 시설개요

| 시설명 | 주소 | 층수 | 준공일 | 연면적 |
|----------|---------------------|-----------|------------|---------|
| 학리 시니어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9-1 | 지하2층~지상4층 | 2023.6.30. | 468.75㎡ |
| 삼성 시니어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00-8 | 지하2층~지상4층 | 2023.12.31 | 459.88㎡ |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어르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사업
 - 건강 생활 증진 사업(건강교실, 기능회복 지원 등)
 -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어르신일자리사업 등)
 - 정서생활 지원사업(상담사업 등)
 - 사회참여 지원 사업(자원봉사 활성화 등)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위탁기간 : 5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라. 소요예산 : 129,380천원(민간위탁금)

- 인건비 : 59,153천원 ※ 3명 기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사업·운영비 : 70,227천원 ※ 규모가 비슷한 강남70+라운지 기준으로 추계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36조(노인여가복지 시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

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 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위치에 동일분야의 여러 시설을 하나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1개소로 볼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조(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하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동의안 세부내용 검토

가.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종전의 노후화된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을 철거후 재건축하고 각각 학리시니어센터 및 삼성시니어센터(이하 ‘학리·삼성시니어센터’)로서 각각 2023년 6월과 12월 준공예정에 있는 바, 지난 2023년 5월 제정된 「서울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 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2)에 의거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1) 「서울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구청장이 위와 같은 학리·삼성시니어센터를 민간기관인 수탁자에게 위탁하려는 사무의 범위는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부문’으로서 구체적 위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어르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사업
- ② 건강 생활 증진 사업(건강교실, 기능회복 지원 등)
- ③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어르신일자리사업 등)
- ④ 정서생활 지원사업(상담사업 등)
- ⑤ 사회참여 지원 사업(자원봉사 활성화 등)
- ⑥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학리·삼성시니어센터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주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용과 건물 관리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라고 보여지는바,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상기 학리·삼성시니어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공공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각종의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전달되어짐.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① 구청장은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2. 재계약 하는 경우

- 이처럼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實益)은 경쟁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전달비용 절감,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전문성 제고,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속적 대응의 확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위탁의 제반 효과 중에서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이 가장 주된 관심의 초점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공급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임.
- 따라서 학리·삼성시니어센터 민간위탁사무가 의회를 동의를 얻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위탁기간(5년) 동안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를 집행부 차원에서 꾸준하고 일관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2 동의안에 대한 결론

- 민간위탁사업은 공행정이 맡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① 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의 합리화 도모, ② 공무원의 증원 수요 억제, ③ 대민서비스 향상, ④ 업무의 전문성 확보, ⑤ 행정의 민주화 및 민간 부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지역사회내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였고 지역사회 특성과 욕구 파악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에게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문적 기술을 발휘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리·삼성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1. 학리·삼성시니어센터 현황 자료

| 구분 | | 학리시니어센터(23. 6월 준공) | | 삼성시니어센터(23. 12월 준공) | |
|----------|-----|--------------------|--|---------------------|--|
| 소재지 | | 논현동 109-1 | | 삼성동 100-8 | |
| 규모 | 연면적 | 468.75㎡ | | 459.88㎡ | |
| | 층수 | 지하2층 ~지상4층 | | 지하2층 ~지상4층 | |
| 층별 용도 | 4층 | 할아버지방 | | 할아버지방 | |
| | 3층 | 할머니방, 주방 | | 할머니방 | |
| | 2층 | 사무실 | | 프로그램실 | |
| | 1층 | 북카페 | | 공용공간 | |
| | 지하층 | 다목적실 | | 주방 및 식당 |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197 |
|----------|-----|

제출년월일 : 2023. 6.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소관부서 :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어르신에게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후화된 구립경로당을 신축한 학리·삼성 시니어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문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하고자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안건내용 :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주소 | 층수 | 준공일 | 연면적 |
|-------------|------------------------|-----------|------------|---------|
| 학리 시니어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9-1 | 지하2층~지상4층 | 2023.6.30. | 468.75㎡ |
| 삼성 시니어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00-8 | 지하2층~지상4층 | 2023.12.31 | 459.88㎡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어르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사업
 - 건강 생활 증진 사업(건강교실, 기능회복 지원 등)

-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어르신일자리사업 등)
- 정서생활 지원사업(상담사업 등)
- 사회참여 지원 사업(자원봉사 활성화 등)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위탁기간 : 5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라. 소요예산 : 129,380천원(민간위탁금)

- 인건비 : 59,153천원 ※ 3명 기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사업·운영비 : 70,227천원 ※ 규모가 비슷한 강남70+라운지 기준으로 추계

3. 참고사항(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36조(노인여가복지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위치에 동일분야의 여러 시설을 하나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1개소로 볼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조(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하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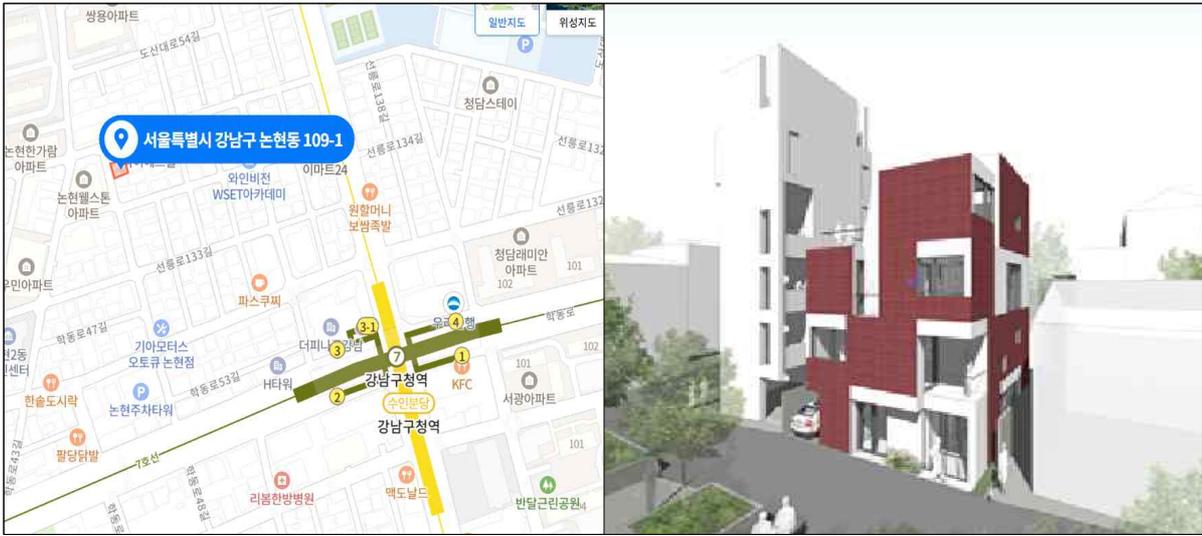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붙임 : 위치·조감도

□ 학리시니어센터 위치도·조감도



□ 삼성시니어센터 위치도·조감도

